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나571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나57159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5 선고 2022가소21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3. 11. 10.

판결선고 2023. 12. 15.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5. 선고 2022가소21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2023.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년 6월경 ‘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피고에게 ‘부산 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24,050,000원에 도급주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21. 6. 24.

5,000,000원, 2021. 7. 1. 5,000,000원, 2021. 7. 14.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21. 8.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공사계약서에는 각 세부공사별 공사금액을 기재한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 중 철거공사 금액으로 2,00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위 철거공사까지 마친 후 위 인테리어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원고의 공사 진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2. 3. 21.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장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5. 2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15,000,000원에서 이미 공사를 완료한 철거공사부분 공사대금 2,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0원(= 15,000,000원 - 2,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던 중 원고의 어머니가 무리하게 공사범위 확장과 변경을 요구하여 약정한 공사대금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이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자재비, 인건비 및 피고 개인의 인건비(20일치)로 합계 15,804,000원(= 자재비 3,054,000원 + 인건비 7,750,000원 + 피고 인건비 5,0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아파트 계량기 설치비 540,000원까지 대납함으로써 합계 16,344,000원(= 15,804,000원 + 54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공사대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여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당 기간 공사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어머니가 무리하게 공사범위 확장과 변경을 요구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결국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기존 계약에 따른 공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전체 공사금액을 정하고 각 세부공사별로 견적서가 작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세부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닐뿐더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철거공사 정도가 마무리되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5.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정성호, 판사 최지영